

## [정정]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제292-1회, 제29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부보사채)

주식회사 두산의 2020년 6월 17일자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본 공고는 기존 소집공고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오기를 수정하기 위한 정정이고 사채권자 집회 공고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기존 소집공고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아 래 -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장 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참석자 간 넓은 좌석 공간 확보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존 공고문에 안내해 드린 바에 따라서 장소 변경	두산타워 28층 대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75) ⇒ 최근 서울 및 경기권 중심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장소는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내 예정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서울 중구 퇴계로 387) ⇒ 최근 서울 및 경기권 중심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장소는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내 예정
4. 회의 목적사항	회의 목적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내용) 사채 조기 상환 옵션 추가 내용, 구체적인 상환조건 및 내용에 관하여는 사채 판매 증권사를 통하여 사전에 별도로 고지한	(내용) 주식회사 두산의 제 292-1 회, 제 292-2 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부보사채 (KR6000151862, KR6000152860) 에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사항(서면결의서상 의안 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p>	<p>대하여 아래와 같이 옵션을 추가함</p> <p>1. 콜옵션 행사비율 : 발행금액의 전액 (100%)</p> <p>2. 콜옵션 행사일자 : 2020년 8월 10일 부터(당일 포함) 매 영업일 행사(조기상환) 가능</p> <p>3. 콜옵션 행사 조건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는 사채원금 및 경과이자(기존 사채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직전 이자 지급 기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원단위 미만 절사) 실제 경과 일수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하기로 함</p> <p>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의 1.33%에 해당하는 금원(원단위 미만 절사)을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수수료로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함</p>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콜업선 행사시 통 지시한 : 조기상환일 로부터 5영업일 전 까지 사채권자 및 한 국예탁결제원에 통지 함
7. 공탁에 관한 사항	공탁기한 수정	사채권자는 집회 1 주일 전인 2020년 7 월 1일까지 상법 제 492 조 제 2 항에 따 라 사채의 전자등록 증명서를 법원(시, 군 법을 제외한 어느 법 원에서든 가능합니 다)에 공탁하여야 집 회에서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는 집회 1 주일 전인 2020년 6 월 30일까지 상법 제 492 조 제 2 항에 따라 사채의 전자등 록증명서를 법원(시, 군법을 제외한 어느 법원에서든 가능합니 다)에 공탁하여야 집 회에서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습니다.

#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 (제292-1회, 제29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

주식회사 두산의 제292-1회, 제29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의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대한 청약이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사채권자 집회의 안건에 관하여 안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향후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거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내하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7월 8일(수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서울 중구 퇴계로 387)  
◇ 최근 서울 및 경기권 중심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장소는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내 예정
3. 참석대상 : 주식회사 두산 제292-1회, 제29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의 사채권자
4. 회의 목적사항

의안	내용	비고
제1호 사채 조기상환 옵션 추가 의 건	주식회사 두산의 제 292-1 회, 제 292-2 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 (KR6000151862, KR6000152860) 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옵션을 추가함	

	<p>1. 콜옵션 행사비율 : 발행금액의 전액 (100%)</p> <p>2. 콜옵션 행사일자 : 2020년 8월 10일부터(당일 포함) 매 영업일 행사(조기상환) 가능</p> <p>3. 콜옵션 행사 조건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는 사채원금 및 경과이자(기존 사채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직전 이자 지급 기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초일산업, 말일불산업, 원단위 미만 절사) 실제 경과 일수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하기로 함</p> <p>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의 1.33%에 해당하는 금원(원단위 미만 절사)을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수수료로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함</p> <p>4. 콜옵션 행사시 통지시한 :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함</p>	
--	---	--

5. 소집자 : 주식회사 국민은행(주식회사 두산 제292-1회, 제29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의 물상담보를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6. 제안의 이유와 참고사항

가. 제안이유

주식회사 두산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두산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2번지 및 18-16번지 지상 두산타워 건물(토지 포함)(이하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는바, 이를 위해 담보부동산에 대한 물상담보가 설정된 상기 담보부사채 조기 상환을 통해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고 상기 담보부사채를 상환함으로써 주식회사 두산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경영을 정상화 하고자 함

니다.

#### 나. 참고사항

사채권자집회 소집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www.kbstar.com>) 및 주식회사 두산 홈페이지(<http://www.doosan.com>)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제292-1회, 제29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서면결의 관련

의결권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규모 집회나 다수 인원이 참가하는 총회 절차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지양하고 있고, 특히 서울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가급적 서면결의 방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서면결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9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7. 공탁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집회 1주일 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상법 제 492 조 제 2 항에 따라 사채의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시, 군법을 제외한 어느 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에 공탁하여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권자집회 참여를 위한 전자등록증명서 공탁 업무를 주식회사 두산이 대행하기를 원하실 경우, 하기 서류 목록을 구비하시어 아래 송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공탁 업무가 약2~3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아래 서류를 **2020년 6월 26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송부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 공탁 관련 서류(법원 제출용)

- ① 전자등록증명서 1부
- ② 유가증권공탁서(변제 등) 2부
- ③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2부
- ④ 위임장 2부 (공탁용,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용 각 1부)
- ⑤ 신분증 사본 2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인감증명서 3부 (공탁용 1부,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용 2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 송부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 29층, (주)두산 관리본부 자금팀 (Tel. 02-3398-3542)

##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가. 직접 또는 대리행사

의결권은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나. 출석행사 시 지참서류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행사의 방법에 따릅니다.

#### 1) 직접행사 :

-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②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 ③ 신분증

#### 2) 대리행사 :

-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②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 ③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 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 ⑤ 본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⑥ 대리인의 신분증

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5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집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분의 의결권은 의결권 총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9. 의결권 서면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서면 행사

의결권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 행사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별도 첨부 참조). 이 양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① 집회의 명칭과 일시, ② 사채권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③ 보유사채금액, ④ 각 의안별 찬반표시, ⑤ 사채권자의 기명날인이 기재되면 정당한 의결권 행사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다. 의결권 서면 행사 시한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 원본,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첨부하여 집회일 전일까지 하기의 명기된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개최일 전일까지 의결권 행사 서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자등록증명서 공탁업무를 주식회사 두산에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위 7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송부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 29층, (주)두산 관리본부 자금팀 (Tel. 02-3398-3542)

#### 라. 찬반 불표시 서면행사의 처리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별 찬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찬반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는 산입되지만, 각 의안결의시의 찬반투표 계산시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 결의의 효력

가. 본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제498조 제2항에 따라 제292-1회, 제29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의 사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한 사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거래증권회사로부터 보유 사채에 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이를 다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거래 증권회사에 예탁할 때까지 사채의 양도, 입질 기타 처분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관련 법령 또는 신탁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행회사, 신탁업자 또는 각 사채권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 주식회사 두산

- 담당자 전화번호 : 02-3398-3542

회차	개최일자	발행회사
제292-1회, 제292-2회	2020년 7월 8일	주식회사 두산

2020년 6월 24일

주식회사 두산

대표이사 김 민 철